

CITRIX 데이터 처리 추록

EU 표준 계약 조항:

모듈 3(처리자-처리자)

Citrix 데이터 처리 추록 2021년 9월 17일 버전(<https://www.citrix.com/buy/licensing/citrix-data-processing-agreement.html>)에 위치한 Citrix 트러스트 센터에 게시됨("DPA")의 7조에 따라 DPA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 주체는 DPA에 참조로 포함된 이 EU 표준 계약 조항(모듈 3: 처리자-처리자)을 행사할 수 있다.

표준 계약 조항

1 조

1 항

목적 및 범위

- (a) 이 표준 계약 조항의 목적은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제 3국 전송을 위한 이러한 데이터(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2016년 4월 27일 Regulation(EU) 2016/679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 (b) 당사자:
 - (i)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기구(이하 '주체')로, 부속서 I.A에 나열된 당사자(이하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 (ii)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로부터 부속서 I.A에 나열된, 이러한 조항의 또 다른 당사자인 다른 주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3국의 주체(이하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로서
 이 표준 계약 조항(이하 '조항')에 동의한 주체
- (c) 이러한 조항은 부속서 I.B에 명시된 개인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 (d) 그 안에 참조된 부속서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부록은 이러한 조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2 항

조항의 효과 및 불변성

- (a) 이러한 조항은 Regulation(EU) 2016/679의 조항 46(1) 및 조항 46(2)(c)에 따라, 제어자로부터 처리자로의 데이터 전송 및/또는 처리자 간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행사 가능한 데이터 주체 권리 및 유효한 법적 구제 등의 적절한 보호와 Regulation(EU) 2016/679의 조항 28(7)에 따라 해당하는 모듈을 선택하거나 부록의 정보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정되지 않은 표준 계약 조항을 명시한다.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조항과 모순되거나 데이터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를 해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가 더 넓은 범위의 계약에 포함된 조항에 명시된 표준 계약 조항을 포함하거나 다른 조항 또는 추가 보호를 추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b) 이러한 조항은 Regulation(EU) 2016/679를 이유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해하지 않는다.

3 항

제 3 의 수익자

- (a) 데이터 주체는 제 3 의 수익자로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및/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예외가 적용된다.
- (i) 1 항, 2 항, 3 항, 6 항, 7 항
 - (ii) 8 항 - 모듈 3: 8.1(a), (c) 및 (d)항과 8.9(a), (c), (d), (e), (f) 및 (g)항
 - (iii) 9 항 - 모듈 3: 9(a), (c), (d) 및 (e)항
 - (iv) 12 항 - 모듈 3: 12(a), (d) 및 (f)항
 - (v) 13 항
 - (vi) 15.1(c), (d) 및 (e)항
 - (vii) 16(e)항
 - (viii) 18 항 - 모듈 3: 18(a) 및 (b)항
- (b) (a)절은 Regulation(EU) 2016/679 에 의거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4 항

해석

- (a) 이러한 조항에 Regulation(EU) 2016/679 에 정의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용어는 해당 규정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b) 이러한 조항은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에 비추어 읽고 해석된다.
- (c) 이러한 조항은 Regulation(EU) 2016/679 에서 제공된 권리 및 의무와 상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항

체계

이러한 조항과 양 당사자 간의 관련 계약의 조항 사이에 이러한 조항에 합의한 시기 또는 이후 이러한 조항이 발효된 시기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이 우선한다.

6 항

전송의 설명

전송의 세부 정보와 전송된 개인 데이터의 범주 및 전송 목적은 부속서 I.B 에 명시된다.

7 항

도킹 조항

- (a) 이러한 조항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주체는 양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로서 부록을 작성하고 부속서 I.A 에 서명하여 언제든지 이러한 조항에 응할 수 있다.
- (b) 부록을 작성하고 부속서 I.A 에 서명한 후 가입 주체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당사자가 되며 부속서 I.A 에서 지정된 대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c) 가입 주체는 당사자가 되기 이전의 기간에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II 조 - 당사자의 의무

8 항

데이터 보호 조치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의 구현을 통해 이러한 조항에 의거한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증한다.

8.1 지침

- (a)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제어자 지침에 따라 처리자 역할을 함을 처리 전에 알려야 한다.
-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대로, 제어자가 문서화한 지침과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추가로 문서화한 지침에 의거해서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지침은 제어자의 지침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제어자 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 (c)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제어자의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즉시 제어자에게 알려야 한다.
- (d)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제어자와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거한 기타 법률 행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시행했음을 보증한다(9).

8.2 목적 제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제어자의 추가 지침 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추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한, 부록서 I.B 에 명시된 특정 전송 목적으로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8.3 투명성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작성한 부록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항의 사본을 데이터 주체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영업 기밀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사본을 공유하기 전에 부록의 텍스트 일부를 삭제할 수 있지만, 데이터 주체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유의미한 요약물 제공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에게 삭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가능한 정도까지 삭제의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8.4 정확성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개인 데이터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 협조하여 데이터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8.5 처리 기간 및 데이터의 삭제 또는 반환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 의한 처리는 부록서 I.B 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수행되어야 한다. 처리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된 후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제어자를 대신해 처리된 모든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거나 대신 처리한 모든 개인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기존 사본을 삭제해야 한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반환되기 전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현지 법률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반환 또는 삭제가 금지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며 해당 현지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한 정도와 기간까지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것임을 보증한다. 이는 14 항을 침해하지 않으며, 특히 14(e)항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14(a)항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계약 기간에 걸쳐 이를 알려야 한다.

8.6 처리의 보안

-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와 또한 전송 중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우발적 또는 불법적 폐기, 손실, 조작, 허가되지 않은 공개 또는 액세스로 이어지는 보안 침해(이하 '개인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는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을 구현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보안을 평가할 때는 최신 기술, 구현 비용, 처리의 특성, 범위, 맥락 및 목적과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 주체의 위험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특히, 전송 중일 때를 포함하여, 처리의 목적이 이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경우 암호화 또는 가명화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가명화의 경우 가능하면 개인 데이터에 대한 특정 데이터 주체의 저작 표시를 위한 추가 정보는 전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또는 제어자를 통해 제어되어야 한다. 이 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최소한 부속서 II에 명시된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을 구현해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수단이 계속해서 적정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정기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계약의 시행, 관리 및 모니터링에 엄격히 필요한 정도까지만 직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기밀성에 대한 계약을 맺었거나 기밀성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c)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 의해 처리된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반작용을 완화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침해를 알게 된 후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제어자(해당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고지에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 지점에 대한 세부 정보와, 침해의 특성에 대한 설명(가능한 경우 데이터 주체 및 관련된 개인 데이터 레코드의 범주 및 대략적인 숫자 포함), 가능한 결과 및 데이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거나 제안한 수단(가능한 반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 포함)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초기 고지에는 당시 사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후에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d)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협조하고 지원하여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Regulation(EU) 2016/679 에 의거한 의무, 특히 제어자에게 알려 제어자가 처리의 특성 및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 및 영향을 받는 데이터 주체에게 알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7 민감한 데이터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또는 노조 가입,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용도의 유전적 데이터 또는 생체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또는 개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성향 또는 형사 판결 및 범죄 관련 데이터를 노출하는 개인 데이터(이하 '민감한 데이터')가 전송에 포함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부속서 I.B 에 명시된 특정 제한 및/또는 추가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8.8 제 3 자 전송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대로, 제어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의거해서만 개인 데이터를 제 3 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유럽 연합 외부에 위치한 제 3 자에게 데이터를 공개(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와 동일한 국가 또는 다른 제 3 국, 이하 '제 3 자 전송')하는 경우 제 3 자가 해당하는 모듈에 의거하여 이러한 조항에 구속되거나 이러한 조항에 동의한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 (i) 제 3 자 전송이 제 3 자 전송을 다루는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45 에 따른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ii) 제 3 자가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46 또는 47 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보장하는 경우
- (iii) 제 3 자 전송이 특정 행정, 규제 또는 사법 절차의 맥락에서 법적 권리의 수립, 행사 또는 방위에 필요한 경우
- (iv) 제 3 자 전송이 데이터 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모든 제 3 자 전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 특히 목적 제한에 의거한 다른 모든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8.9 문서화 및 규정 준수

-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에 의거한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또는 제어자의 문의를 즉각적이고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 (b) 양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제어자를 대신하여 시행된 처리 활동을 적절히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 (c)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에 명시된 의무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d)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합당한 간격으로 또는 규정 미준수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항에서 다루는 처리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감사를 허용하거나 이에 협조해야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제어자의 지침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 감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보유한 관련 인증을 고려할 수 있다.
- (e) 제어자의 지침에 따라 감사가 시행되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제어자에게 감사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 (f)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감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독립 감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감사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사내 또는 물리적 시설에서의 조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합당한 고지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 (g) 양 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b) 및 (c)절에 언급된 정보를 모든 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9 항

하청 처리자의 사용

-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합의된 목록에 있는 하청 처리자의 참여에 대해 제어자의 개괄적 수권을 가진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최소 14 일 전에 하청 처리자의 추가 또는 교체를 통해 해당 목록의 의도한 모든 변경을 제어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하청 처리자의 참여 전에 이러한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어자에게 주어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제어자에게 제어자가 이의 제기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하청 처리자의 참여를 알려야 한다.

-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하청 처리자와 함께 제어자를 대신하여 특정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에 대한 제 3의 수익자 권리의 측면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항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제공하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이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8.8 항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하청 처리자가 이러한 조항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c)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또는 제어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하청 처리자 계약 및 후속 수정 계약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영업 기밀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사본을 공유하기 전에 계약의 텍스트를 삭제할 수 있다.
- (d)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하청 처리자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하청 처리자가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하청 처리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e)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하청 처리자와의 제 3의 수익자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법적으로 소멸한 상태가 되었거나 파산한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하청 처리자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 처리자에게 개인 데이터의 삭제 또는 반환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 항

데이터 주체 권리

-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제어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데이터 주체로부터 받은 요청에 응하기 전에 이러한 요청을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해당하는 경우 제어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협조하여 Regulation(EU) 2016/679 또는 Regulation(EU) 2018/1725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데이터 주체의 요청에 제어자가 응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지원을 제공할 처리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의 범위 및 정도를 고려하여 부록서 II에 해당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 (c) (a) 및 (b)절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전달한 제어자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1 항

보상

-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에게 불만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연락 지점을 개별 고지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고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형식으로 알려야 한다. 데이터 주체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 (b) 데이터 주체와 한쪽 당사자 간에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으로 즉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분쟁을 서로에게 알리고 해당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협조한다.
- (c) 데이터 주체가 3항에 따라 제 3의 수익자 권리를 언급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의 주체의 결정을 수락하여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i) 데이터 주체의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회원국의 감독 기관 또는 13항에 따라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제기한다.
 - (ii) 18항의 의미 내에서 권한이 있는 법원에 분쟁을 회부한다.
- (d) 양 당사자는 Regulation (EU) 2016/679의 조항 80(1)에 명시된 조건 하의 비영리 기구, 조직 또는 협회가 데이터 주체를 대리할 수 있음을 수락한다.

- (e)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의거하여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따른다.
- (f)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의 선택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구제책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주체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12 항

책임

- (a) 각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 또는 하청 처리자가 이러한 조항에 의거한 제 3의 수익자 권리를 침해하여 데이터 주체에게 야기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 (c) (b)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또는 하청 처리자)가 이러한 조항에 의거한 제 3의 수익자 권리를 침해하여 데이터 주체에게 야기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책임을 해하지 않으며 제어자를 대신하여 처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 Regulation(EU) 2016/679 또는 Regulation(EU) 2018/1725 에 의거한 제어자의 책임을 해하지 않는다.
- (d) 양 당사자는 (c)절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또는 하청 처리자)가 야기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손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상의 일부를 다시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 (e)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결과로 데이터 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둘 이상의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는 공동으로 각자 책임을 지며 데이터 주체는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 (f) 양 당사자는 한 당사자에게 (e)절에 의거한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상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다시 청구할 자격이 있다.
- (g)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청 처리자의 행동을 거론할 수 없다.

13 항

감독

- (a)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EU 회원국에서 설립된 경우: 부록 IC 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Regulation(EU) 2016/679 준수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감독 기관은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EU 회원국에서 설립되지 않았지만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3(2)에 따라 적용되는 영토 범위 내에 포함되고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27(1)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부속서 IC 에 명시된 대로 Regulation (EU) 2016/679 의 조항 27(1)의 의미 내에서 설정된 대리인이 있는 회원국의 감독 기관이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EU 회원국에서 설립되지 않았지만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3(2)에 따라 적용되는 영토 범위 내에 포함되고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27(2)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속서 IC 에 명시된 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행동이 모니터링되는 데이터 주체가 있는 회원국 중 하나의 감독 기관이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한다.

-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의 관할권에 출석하고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 특히,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문의에 답하고, 감사에 응하며, 구제 및 보상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감독 기관이 채택한

수단을 따르는 데 동의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감독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III 조 - 공공 기관의 액세스에 대한 현지 법률 및 의무

14 항

조항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 및 관행

- (a) 양 당사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제 3 대상 국가에 개인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률 또는 공공 기관의 액세스를 허가하는 수단 등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및 관행이 없음을 보증한다. 이는 기본권 및 자유의 본질을 존중하고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않고 비례하여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23(1)에 나열된 목표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관행이 이러한 조항과 모순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 (b) 양 당사자는 (a)절의 보증을 제공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 요소를 고려했음을 선언한다.
 - (i) 처리 체인의 길이, 관련된 행위자 및 사용된 전송 채널의 수, 의도한 제 3 자 전송, 수신자 유형, 처리 목적, 전송된 개인 데이터의 범주 및 형식, 전송이 발생하는 경제 구역, 전송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포함한 전송의 특정 상황
 - (ii) 전송의 특정 상황에 비추어 공공 기관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러한 기관의 액세스를 허가하는 법률 및 관행과 적용 가능한 제한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한 제 3 대상 국가의 법률 및 관행
 - (iii) 전송 중에 적용되는 수단과 대상 국가 내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적용되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계약, 기술 또는 조직적 보호 조치
- (c)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b)절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증하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협조하여 이러한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동의한다.
- (d) 양 당사자는 (b)절에 따른 평가를 문서화하고 요청 시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 (e)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 고지를 제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f) (e)절에 따른 고지 이후 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제어자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및/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적절한 수단(예: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또는 조직적 수단)을 즉시 식별해야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러한 전송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제어자 또는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에 의거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해당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해지에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조항, 16(d)항 및 (e)항이 적용된다.

15 항

공공 기관에서 액세스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의무

15.1 고지

- (a) 다음의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가능한 경우 데이터 주체에게 즉시(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도움을 받아) 고지하는 데 동의한다.

(i) 사법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전송된 개인 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을 수신한 경우. 요청된 개인 데이터, 요청 당국, 요청의 법적 기준 및 제공된 응답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고지에 포함해야 한다.

(ii) 공공 기관이 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전송된 개인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이러한 고지에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 고지를 제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및/또는 데이터 주체에 고지하는 것이 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금지를 면제받아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문서화하여 이를 입증하는 데 동의한다.

(c) 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계약 기간에 정기적인 간격으로, 받은 요청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구체적으로, 요청의 수, 요청된 데이터의 유형, 요청 당국,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이의 제기의 결과 등).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 정보를 제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d)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a) ~ (c)절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고, 요청 시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e) (a) ~ (c)절은 14(e)항 및 16 항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해하지 않는다.

15.2 적법성 검토 및 데이터 최소화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공개 요청의 적법성, 특히 요청 공공 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중한 평가 후 대상 국가의 법률, 국제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의무 및 국제 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요청이 불법이라고 간주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동의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의 제기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결정권이 있는 관할 기관이 공과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요청의 효과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시 수단을 구해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절차적 규칙에 따라 요구될 때까지 요청된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14(e)항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의무를 해하지 않는다.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요청 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및 이의 제기를 문서화하고, 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까지 이러한 문서를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요청 시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 평가를 제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c)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공개 요청에 응할 때 요청의 합당한 해석에 근거하여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IV 조 - 최종 조항

16 항

조항 미준수 및 해지

(a)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어떤 이유든 이러한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b)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규정 준수가 다시 확인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데이터의 전송을 중지한다. 이는 14(f)항을 해하지 않는다.

- (c)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개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i)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b)절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을 중지했고 이러한 조항에 대한 준수가 합당한 시간 내에 또는 중지 후 1개월 이내에 복원되지 않은 경우
 - (ii)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의 대부분을 위반하거나 영구적으로 위반한 경우
 - (iii)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결정권이 있는 법원 또는 감독 기관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과 제어자에게 이러한 규정 미준수를 알려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해당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해지에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d) (c)절에 따라 계약 해지 전에 전송된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되거나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모든 사본에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데이터의 삭제를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반환되기 전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현지 법률에 따라 전송된 개인 데이터의 반환 또는 삭제가 금지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며 해당 현지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한 정도와 기간까지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것임을 보증한다.
- (e) 모든 당사자는 이러한 조항에 구속되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i)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개인 데이터의 전송을 다루는 Regulation(EU) 2016/679의 조항 45(3)에 따라 결정을 택한다. 또는 (ii) Regulation(EU) 2016/679는 개인 데이터가 전송된 국가 내 법적 체도의 일부가 된다. 이는 Regulation(EU) 2016/679에 의거하여 문제의 처리에 적용되는 다른 의무를 해하지 않는다.

17 항

준거법

이러한 조항은 제 3의 수익자 권리를 허용하는 EU 회원국 중 하나의 법률로 통제된다. 양 당사자는 이 법률이 아일랜드의 법률이 되는 데 동의한다.

18 항

법정 및 관할권의 선택

- (a) 이러한 조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EU 회원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 (b) 양 당사자는 이 법원이 아일랜드의 법원이 되는 데 동의한다.
- (c) 또한 데이터 주체는 자산이 거주하는 회원국의 법원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및/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 (d) 양 당사자는 이러한 법원의 관할권에 출석하는 데 동의한다.

부속서 I

A. 당사자 목록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와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책임자 및/또는 유럽연합 담당자의 신분 및 연락처 세부 정보]

- 이름: _____
 주소: _____
 담당자 이름: _____
 담당자 직위: _____
 담당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 _____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전송된 데이터와 관련된 활동: Citrix 서비스 설명서에 설명된 IT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서명 및 날짜: _____, 202_____
 역할(제어자/처리자): 처리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 [데이터 보호 담당자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당사자의 신분 및 연락처 세부 정보]

- 이름: Citrix Systems, Inc.(해당 계열사 포함)
 주소: 851 West Cypress Road, Ft. Lauderdale, FL 33309
 담당자 이름: Peter Lefkowitz
 담당자 직위: 부사장, 최고 디지털 위험 책임자
 담당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 전화:+1 954 267 3000 팩스: + 1 805 690 6471 이메일: modelclauses@citrix.com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전송된 데이터와 관련된 활동: IT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Citrix 서비스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제공
 서명 및 날짜: _____, 202_____
 역할(제어자/처리자): 처리자

B. 전송의 설명

개인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이터 주체의 범주

DPA 의 5 조를 참조한다.

전송된 개인 데이터의 범주

DPA 의 5 조를 참조한다.

전송된 민감한 데이터(해당하는 경우) 및 데이터의 특성 및 관련 위험을 완벽하게 고려하여 적용된 제한 또는 보호 조치(예: 엄격한 목적 제한, 특수 교육을 받은 직원의 액세스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액세스 제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기록 유지, 제3 자 전송에 대한 제한 또는 추가 보안 수단)

전송된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결정하고 제어하며 정부 식별자, 종교적 선호도 또는 서비스 수행을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다른 모든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수단은 Citrix 서비스 보안 별첨(<https://www.citrix.com/buy/licensing/citrix-services-security-exhibit.html>)에 설명되어 있다.

전송의 빈도(예: 데이터의 일회성 전송 또는 지속적 전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송한다.

처리의 특성

DPA 의 4 조를 참조한다.

데이터 전송 및 추가 처리의 목적

DPA 의 4 조를 참조한다.

개인 데이터가 유지되는 기간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DPA 의 12 조를 참조한다.

하청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송의 경우 처리의 주제, 특성 및 기간도 명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trix.com/buy/licensing/subprocessor-list.html> 을 참조한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송한다.

C.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

13 항에 따라 결정권이 있는 감독 기관을 식별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EU 회원국에서 설립된 경우: 아일랜드의 감독 기관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EU 회원국에서 설립되지 않았지만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3(2)에 따라 적용되는 영토 범위 내에 포함되고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27(1)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아일랜드의 감독 기관

데이터를 내보내는 당사자가 EU 회원국에서 설립되지 않았지만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3(2)에 따라 적용되는 영토 범위 내에 포함되고 Regulation(EU) 2016/679 의 조항 27(2)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일랜드의 감독 기관

부속서 II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을 포함한 기술적 및 조직적 수단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수단은 Citrix 서비스 보안 별첨(<https://www.citrix.com/buy/licensing/citrix-services-security-exhibit.html>)에 설명되어 있다.